

소아과 의사 비급여대상 진료행위 +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+ 국민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
+ 의사 징역 1년 6월 실형 판결: 의정부지방법원 2016. 7. 11. 선고 2016고단1220 판결

조금 특이한 판결로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. 이례적 판결이지만 반드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.

소아과 의사가 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2년 동안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,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요양급여 명목으로 41,260원을 교부 받았고,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요양급여 명목으로 약 **1억 9천만원**을 교부 받았다는 혐의로, 의사를 징역 1년 6월로 형사 처벌한 사례입니다.

법원은 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을 한 이유를 판결문 중 **[선고형의 결정]** 항목에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.

"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기망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. 피고인은 환자들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**진료기록부나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**하고, 심지어 국내에 머무르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진료를 한 것처럼 속였으며, 그러한 기망행위로 의료급여를 편취한 **횡수가 1만여 회를 상회한다**. 피고인이 초범인 점,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,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, 이 사건 **범행의 죄질과 횡수 등을 고려하면** 실형이 불가피하다.

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 **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과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**을 강조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.

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이른바 차용금 사기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. 그것은 통상의 사기죄는 대개 개인 간 문제이고, 민사적 관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므로, 피해가 모두 회복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필

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.

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개인 간 문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며,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일반 국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도 아니다.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범행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,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범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, 반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범인이 피해변제를 하기만 하면 **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**면,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수법의 **공금 편취 또는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**는 극도로 제한되고 만다.

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터무니없다는 점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이 기망 행위를 통해서 **1만여 회 이상 공금을 편취하였을 경우**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고려하면 명확하다.

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 박탈이 피고인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없으며, 이 사건 기망행위에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지식과 자격을 적극 활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오히려 마땅한 것이다."